

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5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9.

발 의 자 : 윤재옥 · 백중헌 · 엄태영  
서천호 · 이달희 · 김 건  
김기웅 · 이진숙 · 안상훈  
강대식 · 김태호 의원  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투·개표 절차상 투명성, 정확성,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·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,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한 뒤 “사전투표관리관”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투표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인명부에 이미 투표한 것으로 표시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투표한 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, 신분증명서 제시만으로는 선거인의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 아울러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이 인쇄날인으로 대체되어 운용됨에 따라 투표용지의 진위 및 사전투표 절차의 신뢰성에 대

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도록 하고,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이 이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대조·확인하도록 하여 선거인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,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같음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투표 관리를 위해 선거인 수, 예상 투표자 수, 투표소의 규모 및 투표사무 처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투표구와 사전투표소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1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실물 도장날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투표 절차의 정확성·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146조의2 등).

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6조의2제1항 중 “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,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”을 “각 투표구와 사전투표소마다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을 각각 1명 이상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수는 선거인 수, 예상 투표자 수, 투표소의 규모 및 투표사무 처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57조제1항 중 “제시하고”를 “제시하여”로, “후”를 “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은 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私印捺印欄에 私印”을 “제1항에 따른 손도장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私印捺印欄에 私印”으로 한다.

제158조제3항 중 “투표용지 발급기”를 “제2항에 따른 손도장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투표용지 발급기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,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6조의2(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) ①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<u>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,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.</u> &lt;후단 신설&gt;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157조(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)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·운전면허</p>	<p>제146조의2(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) ①----- ----- -----<u>각 투표구와 사전투표소마다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을 각각 1명 이상을</u>----- -----<u>. 이 경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수는 선거인 수, 예상 투표자 수, 투표소의 규모 및 투표사무 처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7조(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증·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. 이하 “신분증명서”라 한다)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.

② 투표관리관은 選舉日에 選舉人에게 投票用紙를 교부하는 때에는 私印捺印欄에 私印을捺印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枚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私印을 미리捺印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.

③ ~ ⑧ (생략)

제158조(사전투표) ①·② (생략)

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“사전투표관리관”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. <후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제시하여-----  
-----다음 전자적  
방식으로 손도장을 찍은 후 -----  
-----.

②-----  
-----  
-----제1항에 따른 손도장이  
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 
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 
私印捺印欄에 私印-----  
-----  
-----.

③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58조(사전투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제2항에  
따른 손도장이 주민등록정보시  
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  
는지 확인하고 투표용지 발급  
기-----  
-----  
-----이

<p><u>단 신설</u>&gt;</p> <p>④ ~ ⑧ (생략)</p>	<p><u>경우,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</u> <u>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</u> <u>수 없다.</u></p> <p>④ ~ ⑧ (현행과 같음)</p>
--	--